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시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관한 논의: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중심으로

서현우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Juris Doctor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옹호하는 시위대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¹⁾

1. 들어가는 말

지난 2022년 10월 3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사건²⁾ 및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사건³⁾과 관련하여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제도인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위 두 소송은 2014년 11월경 공정한 입학 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이하 ‘SFA’)이라

1) 사진 출처: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fc0eea3d-4fa0-43fb-badd-cb5820e8056d>.

2)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Docket 20-1199).

3)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Docket 21-707).

는 단체가 소수 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며 하버드 대학교(이하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이하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것이다. SFA는 하버드대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수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는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결과 SFA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각 해당 주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합격자의 인종 분포 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22년 10월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였고, 연방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합헌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6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올 6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과 1964년 민권법의 배경을 살펴본 후,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및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사건의 주요 내용과 연방대법원 심리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4)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로 불리며 1964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면서 만들어진 법률. 인종 및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배경

미국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은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된 연유와 궤를 같이한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 1868년에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수정 제14조가 비준되어 흑인들이 주민으로서 법적 평등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의 법적 평등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흑백 분리주의적 인종차별법인 이른바 ‘짐 크로우법(Jim Crow Laws)⁵⁾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차례 짐 크로우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896년 연방대법원은 Plessy v. Ferguson 사건⁶⁾에서 철도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두 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이 승객을 분리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하기 때문에 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1899년 Cumming v. Richmond County Board of Education 사건⁷⁾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⁸⁾에서 흑인과 백인을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조치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한 Plessy v. Ferguson 판결을 58년 만에 뒤집어 미국 전역의 마을과 도시들에서 흑인과 백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제도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흑인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5) 1880년대 미국 남부에서 실시됐던 흑백 분리정책. 1830년대 뮤지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백인 뮤지컬 배우들이 흑인들을 비하하는 공연을 했었다. 이후 ‘짐 크로우’는 남부의 여러 주와 도시가 흑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제정한 흑백분리법을 일컫게 되었다.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같은 식당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6)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540 (1896).

7) Cumming v. Richmond County Board of Education, 175 U.S. 528, 535 (1899).

8)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 500 (1954).

대통령이 인종과 민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도입되었다.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권리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었다.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흑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과거 흑인들이 겪었던 제도적, 관행적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흑인들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1963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민권법안을 제안한 후 1964년 7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었다. 1964년 민권법은 최초의 민권법(1875)과 비교해볼 때 법의 적용 대상과 방법, 행정 및 사법절차, 관할 기관의 운영 등을 세밀하게 명시하였다.⁹⁾ 특히 차별 금지 조항에서 기존의 민권법과는 다르게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숙박 시설, 대중교통, 극장, 공중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기업 및 직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¹⁰⁾ 눈에 띄는 점은 연방 정부가 보기에 ‘법의 평등한 보호’가 부족하여 인종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 인권 운동가들이 연방 법원을 이용한 법적 전략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권법 제정과 맞물려 실시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은 이후 백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백인들은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다수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학 입시나 직원채용 등에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에는 이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일련의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1978년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사건¹¹⁾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 수정 제14

9) 최초 민권법은 1875년 미국 남북 전쟁 재건 시대에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5)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공공 편의 시설과 대중교통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았다. 이후 1964년 실질적인 민권법이 제정되기 이전 1957년 9월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57)이 도입되어 대통령에게 흑인의 투표권 실시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0) 변영학, 미국의 민권정치: 1964년 민권체제를 중심으로, 2021, 11, 12면

1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280 (1978).

조의 평등조항은 적극적 우대조치에 의한 소수 인종에 대한 특혜라는 ‘자애로운 차별(benign discrimination)’까지도 금하는 것이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인종적인 요소만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인종을 대학 입시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 인종의 비율을 정해 놓은 할당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3. 사건개요

2014년 11월 17일, 비영리단체 SFA는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지원자들을 지속적으로 차별해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보스턴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¹²⁾ SFA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여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입학사정관들을 인터뷰한 결과 하버드대가 학업성적 이외의 지표인 주관적 개인평가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고, 입학 심사에서 수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A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지론자인 에드워드 블럼이 이끄는 단체로 이미 수차례 소수 인종 우대정책으로 피해를 겪은 대학생들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에 하버드대는 어떤 집단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차별을 가한 적이 없고, 입학 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인종도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반박하였다.

2019년 10월경 보스턴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 심사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월경 SFA는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2021년 2월, SFA는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

12)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Docket 20-1199).

원은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 법무부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SFA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법정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차별하였고,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인종의 다양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하버드대 및 25개 시민단체와 하버드대 동창회 등은 법무부에 반대하고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학 심사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기는 일부 아시아계를 비롯해 유색인종들에 대한 더 큰 차별을 야기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수 인종 우대정책 철폐를 시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수 미국 언론들은 SFA가 제기한 소송이 단순히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했는지 여부에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면에는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기를 수십 년간 주장해온 미국 내 보수주의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 등이 전략적으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번 SFA의 소송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중에서도 중국계와 다른 아시아계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특정 주들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현재 주민투표를 통해 이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주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소수 인종 배려 입학 금지한 상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종 요소가 아닌 사회경제적 지표 활용, 즉 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한편, 2014년 11월 SFA는 하버드대와 마찬가지로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도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수정 제14조¹³⁾를 위반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연방

13) 미 헌법 수정 제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적법절차 조항 및 각 주에 대하여는 주에 속하는 모든 시민에 대해 법아래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¹⁴⁾ SFA는 노스캐롤라이나대가 대학 입학 심사
에서 인종적인 배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유리
하게 하여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노
스캐롤라이나대는 입학 심사에서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입학
심사 정책을 취했고, 인종 다양성 추구의 교육 목표라는 공립학교의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2015년 6월경,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 위원회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정의
센터는 소송참가(intervention)¹⁵⁾를 법원에 요청하였다. 2017년 1월 노스캐롤
라이나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공
립학교 입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스캐롤
라이나 변호사 위원회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정의 센터의 허가참가
(permissive intervention)를 받아들였다.

2021년 11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
나대가 입학 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인종도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존립 가능한 인종 중립적인 다른 대안
이 없는 상황에서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 요소를 고려한 입학 심사는 인
종 다양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엄격심사기
준(strict scrutiny)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FA는
즉시 제4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2021년 2월, SFA는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이전 SFA의 하버드
대 소송과 병합하여 심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4. 연방대법원의 변론에서 드러난 대법관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14)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Docket 21-707).

15) 미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참가는 권리참가(intervention as of right)와 허가참가(permissive intervention)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권리참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제3자를 제외했을 때 제3자의 이익 보호에 피해가 가는 경우 법원에 의해 인정된다. 허가참가는 연방법에 의해 제3자가 조건부로 개입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법률상 혹은 사실 관계상 공통의 요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2022년 10월 31일, 연방대법원은 구두 변론을 열어 약 5시간에 걸쳐 S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 소송을 연이어 심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총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 위주로 재편된 현 대법원 구성상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변론에서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에 제로섬 게임에 비유하며 인구 대비 입학생의 비율이 적은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는 불이익이 가게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 인종 우대정책 방식의 인종 분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영향으로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면서 인종 중립적인 대안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¹⁶⁾

한편, 진보 성향의 대법관 중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인종 우대정책 실시가 곧바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 대한 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학이 지원자의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등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흑인이라면 교육적 자원이 제한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학문적 잠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일부는 우리 사회의 기관들이 모든 다양성을 실제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처럼 대법관들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대법관들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16) Nina Totenberg, "Supreme Court's Conservatives Are Openly Hostile to Affirmative Action in Admissions," *National Public Radio News*, October 31, 2022.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톰슨 로이터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의 미국인들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 및 민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번 여론 조사에는 미국 전역의 성인 4,408명이 참여했다. 특히 응답자의 당 지지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중 73%가 소수 인종 우대정책 철폐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46%만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백인은 67%가 인종배려 입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흑인들을 포함한 소수 인종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지 지지율도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Roe v. Wade*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내 대학 입학 심사뿐만 아니라 취업 등 사회적, 경제적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 6월경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내 인종적 갈등이 격화되고 주별 간극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군사, 의료, 과학기술, 기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이 야기될 수 있다. 소수 집단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하여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인종 중립적인 대안의 모색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존폐기로에 서 있어 소수 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 Gabriella Borter, "Most Americans Think College Admissions Should Not Consider Race - Reuters/Ipsos Poll," *Reuters*, February 16, 2023.